

# 용동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(23년)

- 개정근거: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(2023.9.1.)

순	장	현행	개정
1	제9장 학생포상 및 학생훈육 및 징계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9 장 학생포상 및 학생훈육 및 징계</b></p> <p><b>제34조 (학생생활인권규정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<b>별도로 제정·운영 한다.</b>                     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, 징계, 징계 외의 지도방법, 학교 내 교육·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,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·개정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p> <p><b>제35조 (시상 및 장학금 지급)</b> 학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, 품행이 단정하며, 기능이 뛰어난 아동에게 별도의 시상규정에 의하여 시상하고,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.</p> <p><b>제36조 (징계)</b>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① 학교 내 봉사활동                      ② 특별한 교육이수                      1. 징계처분을 할 때에 학교장은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<del>제2항 내지 제7항</del>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2. 학교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3.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.</p> <p><b>제37조 (훈육·훈계방법)</b> 우리 학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·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38조 (학생의 학교생활)</b>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생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9 장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</b></p> <p><b>제34조 (학생생활인권규정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<b>학생의 학교생활</b>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<b>별도로 제정·운영 한다.</b>                     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, <b>생활지도 및 징계</b>, 학교 내 교육·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,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·개정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p> <p><b>제35조 (학생 포상)</b> 학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, 품행이 단정하며, 기능이 뛰어난 아동에게 별도의 시상규정에 의하여 시상하고, 장학금 지급규정(용동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사정 규정)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.</p> <p><b>제36조 (학생의 기본생활)</b> 학생의 학교생활, 생활지도 및 징계에 관한 내용은 <b>학생생활규정</b>에 따른다.</p>